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년월일 : 1998. 12. 15.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를 이후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안 제8조)
- 나. 휴직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안 제8조의2)
- 다.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안 제8조의3)
- 라. 별표중 근무상한 연령을 57세로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표준안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1)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57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제3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3조의2(휴직기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신 설></p>	<p>제3조의3(휴직의 험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

현 행

개 정 안

[별 표]

[별 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구 분 경 노 무 비 고

직 명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57세

비고 : (생 략)

비고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공무원 60세

6급이하공무원 57세

‘세계가 하나되어 강원관광 학교’

강 원 도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물의동 13 / Tel. (036) 67-3046 행정 1126 / Fax 260-2414
총무과 과장 : 정길현 담당자 : 관동근

문서번호 총무 1200-104

시행일자 1993. 9. 23

정 름

수 신 주민자료증

참 조

설명	금수 80252	지
제작일자	1998. 9. 24	결
수급일자	1998. 10. 1	부금수 선별
제작자	국장	국장
발급자	체증 346	발

제 목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1993. 9. 10. 월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개정·공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공포로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의 공포여정보고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 표준안 1부, 을,

강 원 도 지



전경 자치지원국장 박수준

수신처 : 대(01-18),